주식투자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자]

이 콘텐츠에서는 주식투자자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법령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주식투자자 1
1. 주식의 발행·상장 및 공시의무 4
1.1. 주식의 발행과 청약 이해하기 4
1.1.1. 주식의 발행 4
1.1.2. 주식의 청약 6
1.2. 주식의 상장 이해하기 10
1.2.1. 상장의 개념 및 요건 등 10
1.2.2.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12
1.3. 상장법인의 공시사항 확인하기 15
1.3.1.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15
1.3.2. 주요경영사항 등 공시의무 및 불성실공시 18
2. 주식의 거래 21
2.1. 주식거래 방법 이해하기 21
2.1.1. 계좌개설 및 주문 제출 등 21
2.1.2. 매매거래일·거래시간 및 거래 원칙 등 24
2.2. 주주의 권리 확인하기 27
2.2.1. 투하자본 수익·회수 및 경영참여·감독에 대한 권리 27
2.3.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30
2.3.1.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및 배당소득세 30
3. 주식시장 감시제도 35
3.1. 매매거래중단·정지 및 시장경보제도 이해하기 35
3.1.1.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 및 시장경보제도 35
3.2. 불공정거래행위 이해하기 38
3.2.1. 내부자거래 금지 38
3.2.2. 시세조종행위 금지 41
3.2.3.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공매도 제한 등 43

1. 주식의 발행·상장 및 공시의무

1.1. 주식의 발행과 청약 이해하기

1.1.1. 주식의 발행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공개모집(모집 또는 매출)을 통해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의 발행

▪ "주식"은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하나로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증표를 발행한 것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식을 증권 중 지분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참조).

▪ "모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 "매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

> ※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의 의미**
>
> **Q.** 기업공개는 어떤 의미이며, 왜 하는 건가요?
>
> **A.** 기업공개는 소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주식회사가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주주를 공개모집하여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매각함으로써 **일반대중이 유가증권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기업공개를 통해 ①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고, ② 주식의 소유가 완전히 분산되어 특정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문경영인에 따른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해지며, ③ 기업이 소수인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적 공유물이 되게 하고, ④ 투자자 계층이 확대되어 투자수단도 넓어집니다.
>
> <한국거래소-금융교육-자본시장 강의실-책으로 보는 증권투자-초보투자자를 위한 증권과 투자 참조>

유상증자는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고 자기자본을 조달합니다.

유상증자의 의미

▪ "유상증자(有償增資)"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주식회사가 자기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주식대금을 받고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알림마당-자료실-금융용어설명 참조).

▪ 주식회사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기재해야 하지만, 회사 설립 시 그 주식을 전부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설립된 이후 필요하다면 수시로 이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한국거래소-금융교육-자본시장 강의실-책으로 보는 증권투자-초보투자자를 위한 증권과 투자 참조).

유상증자의 유형

▪ 신주(아래 3.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 포함)의 배정은 다음의 방식에 따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

1. 주주배정증자방식: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제3자배정증자방식: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배정증자방식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일반공모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방식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 포함)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 주주배정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3항 전단).

일반공모증자방식의 신주배정

▪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4항 전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5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제2항).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않은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않은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발행되는 주식의 가격 및 수량 등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와 주식의 보유기간 등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수요와 투자성향 등을 파악하는 방법에 따라 파악하는 것을 말함)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무상증자는 기존의 주주에게 그들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새로운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합니다.

무상증자의 의미

▪ "무상증자(無償增資)"는 주식대금의 납입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거래소-금융교육-자본시장 강의실-책으로 보는 증권투자-초보투자자를 위한 증권과 투자 참조).

▪ 무상증자는 기업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재무제표상 항목간 변동을 통하여 자본금이 늘어날 뿐이며, 발행주식수도 늘어나게 됩니다(한국거래소-금융교육-자본시장 강의실-책으로 보는 증권투자-초보투자자를 위한 증권과 투자 참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합니다(「상법」 제461조제1항 참조).

▪ 기존 주주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새로운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상법」 제461조제2항 참조).

> **※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
>
> - 무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회계상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이 있어야 합니다.
> - "이익준비금"은 회사에 매년 발생하는 이익 중 법률에 따라 강제로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으로, 회사는 그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주식배당의 경우는 제외)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상법」 제458조).
> -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을 재원으로 해서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으로,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상법」 제459조제1항 및 「상법 시행령」 제18조).

1.1.2. 주식의 청약

증권신고서를 통해 모집 또는 매출 및 발행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제출

▪ 발행인이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면 그 증권신고서[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 및 일괄신고서(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주식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受理)되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제2항 전단 참조).

▹ "발행인"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항).

증권신고서의 내용

▪ 증권신고서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126조제1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1.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다음의 사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에 대한 서명
①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빠져 있지 않다는 사실
② 증권신고서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③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④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의 사항(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에만 기재)
①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②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③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④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파생결합증권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의 경우만 해당)

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
⑥ 주권비상장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이 인수인의 인수 없이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다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⑦ 자금의 사용목적
⑧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⑨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의 주주에 대한 지급에 관한 사항(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한함)
⑩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발행인에 관한 다음의 사항(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의 사항을 말함)
① 회사의 개요
② 사업의 내용
③ 재무에 관한 사항
④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⑤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⑥ 주주에 관한 사항
⑦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⑧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⑨ 부속명세서
⑩ 주요사항보고서 및 거래소 공시사항 등의 진행·변경상황
⑪ 우발채무 등
⑫ 자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⑬ 발기인 및 주주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에 관한 사항(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한함)
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⑮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제재현황
√ 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
4. 발행예정기간(일괄신고서에만 기재)
5. 발행예정금액(일괄신고서에만 기재)

증권신고의 효력

▪ 증권신고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지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본문).

▹ 다만, 주권상장법인(투자회사는 제외)의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주식(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이 지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

주식 청약 투자자를 위해 투자설명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함)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함)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다음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해당 증권의 발행인의 본점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

투자설명서의 내용

▪ 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4조제1항).

-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해당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청약기간
- 납부기간
- 해당 증권신고서의 사본과 투자설명서의 열람 장소
- 안정조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3항제1호)이나 시장조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3항제2호)을 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이 행해질 수 있다는 뜻
- 청약일 전날(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 등인 경우에는 청약일 이후에도 해당함)까지는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
- 발행회사의 명칭
- 증권의 종목
- 대표주관회사의 명칭

▪ 투자설명서의 본문에서는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제3항 참조).

투자설명서 확인

▪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려는 자(전문투자자,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함)는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함)를 미리 받아야 하며,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증권을 취득하거나 매도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전단).

> ※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
> **Q.** 공모주 청약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여러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 청약에 참여하려고 해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겠죠?
>
> **A.**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의 경우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중복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였고, 거래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공모주 청약 과열 양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한 기업의 공모주 청약부터는 중복청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5항제4호의2가목·나목 참조).
>
> 따라서 일반 청약자는 각각 다른 증권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을 할 수 없고, 중복 청약을 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에 대해서만 주식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이 제한됩니다"(2021. 6. 15.) 참조>

>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기재 등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의 거짓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등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1항 본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 참조).

▪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1항 단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금액은 청구권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할 때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

1.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함)
2. 위 1.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7조).

> ※ **공모주 배정 방식**
>
> • 기존에는 공모주 청약에서 청약주식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하여 주식이 배정(비례방식)됨에 따라 청약증거금의 부담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공모주 청약 참여 기회가 제한됐습니다.
>
> • 2020년 12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부터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일반청약자들에게 공모주 배정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 즉, 기업공개를 통해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50%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배정해야 하며 나머지를 비례방식으로 배정해야 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됩니다."(2020. 11. 18.) 참조>

1.2. 주식의 상장 이해하기

1.2.1. 상장의 개념 및 요건 등

상장은 증권이 한국거래소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의 의미

▪ "상장"은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 전단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 전단).

> ※ **증권의 유통시장**
>
> • 증권의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간에 매매·거래되는 시장으로, 유통시장은 크게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
> 1. **거래소시장(장내시장)**: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
> ① **유가증권시장(KOSPI Market)**: 1956년에 설립된 한국거래소의 시장 중 가장 오래된 시장으로, 전기, 전자, 서비스, 금융, 철강 등 중대형 우량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
> ② **코스닥시장(KOSDAQ Market)**: 미국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1996년에 설립된 시장으로,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문화기술 등과 같은 기술기업과 벤처기업이 주로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 벤처기업 중심 시장입니다.
>
> ③ **코넥스시장(KONEX Market)**: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2013년에 설립된 시장으로, 초기 기업의 성장 및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지원하는 시장입니다.
>
> 2. **장외시장(K-OTC 시장)**: 거래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입니다.
>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KRX시장-시장안내-주식시장 참조>

※ 이 콘텐츠에서는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상장의 종류

▪ 상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 후단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 후단 참조).

- 신규상장: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의 증권을 처음 상장하는 것
- 재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보통주권 또는 채무증권을 다시 상장하거나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
- 우회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 / 코스닥시장에서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양수, 자산양수,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지분증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
- 합병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에 따라 주권을 상장하는 것 / 코스닥시장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합병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것
- 추가상장: 상장법인이 자본금, 사채액, 신탁원본액 등의 증가에 따라 이미 상장되어 있는 증권과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는 것
- 변경상장: 상장증권의 종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여 상장하는 것

상장 절차

▪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를 신청하는 자(이하 “상장신청인”이라 함)의 신청에 따라 상장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 한국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를 하여 상장 승인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 참조).

▪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게 됩니다.

상장은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형식적 심사요건

▪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려면 영업활동기간, 기업규모, 주식분산, 경영성과, 감사의견, 주식양도 제한, 독립이사, 감사위원회 등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

▪ 유가증권시장의 주요 형식적 심사요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참조).

구분	형식적 심사요건(간략)
영업활동기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이 경과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을 것
기업규모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②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에 1,0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으로 함) 평균 700억원 이상일 것
수익성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또는 자기자본이익률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최근 사업연도에 3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60억원 이상일 것 ② 자기자본이익률: 최근 사업연도에 5%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10% 이상일 것 ③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자기자본이익률·영업현금흐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이 3%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현금흐름이 양(+)일 것

질적 심사요건

▪ 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다음의 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0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제1항).

- 영업, 재무상황,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이 인정될 것
- 지분 당사자 간의 관계, 지분구조의 변동 내용·기간 등에 비추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이 인정될 것
-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
-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 ※ 그 밖에 상장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listing.krx.co.kr/)-상장공시-주권상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2.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하거나 자본잠식, 매출액 기준 미달 등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제1항 참조).

관리종목 지정 요건(간략)

-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반기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자본잠식: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 거래량 미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독립이사수 1/4 미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제1항)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300억 미만
-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500억 미달 30일 지속
- 파산신청
- 회생절차개시신청
-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지정 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

▪ 상장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1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제1항제1호).

신용거래 금지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신용거래가 금지됩니다(「금융투자업규정」 제4-30조제2항제1호).

대용증권 사용 금지

▪ 또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대용증권(代用證券: 거래증거금을 현금에 갈음하여 예탁할 수 있는 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8조제2항제1호가목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3조제2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제2호).

관리종목 예고·공표

▪ 상장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예고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내용은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4조제1항·제2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7항).

※ 관리종목 지정 현황에 대한 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open.krx.co.kr/)-KRX시장-투자참고-관리종목 >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서 적격성을 상실하게 되면 상장이 폐지됩니다.

상장폐지의 의미

▪ “상장폐지”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여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하며, 상장폐지된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상장폐지 기준

▪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상장이 폐지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1항 참조).

상장폐지 기준(간략)
• 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또는 2년 연속 한정 •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인 상태로 재무제표 감사의견 부적정 등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도과 • 자본잠식: 자본금 전액 잠식 •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 거래량 미달: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독립이사 선임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의무 위반 •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 사유 미해소 • 해산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 지주회사 편입 • 주식양도 제한 • 우회상장기준 위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상장이 폐지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참조).

-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 매출액 미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공시의무 위반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 √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

▪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2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제1항제2호).

정리매매

▪ 특정한 종목의 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7일(해당 증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증권의 매매거래가 허용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 ※ 정리매매종목 현황에 대한 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open.krx.co.kr/)-KRX시장-투자참고-정리매매종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예고·공표

▪ 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때까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사실이 예고되고,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 사실이 공시매체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5조제1항·제3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1조).

> ※ 상장폐지 현황에 대한 정보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상장법인의 공시사항 확인하기

1.3.1.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상장법인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 등을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 본문).

▪ 사업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사업내용,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임직원과의 거래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1항 참조).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함)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함)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전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아래 6.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9.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함)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3.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6.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및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 포함)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 포함)할 것을 결의한 때
9.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해당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10.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짓기재 등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 거짓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함)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3조제1항의 증권 포함)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항 본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3조제2항).

1. 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 포함)
4. 그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 손해배상의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아래 1.만 해당함)과의 차액으로 추정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3항).

1.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함)
2. 위 1.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5항).

※ 지분공시제도(주식의 대량보유 보고 및 공시 제도)

Q. 한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주주는 지분공시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요건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함),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제2항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항 전단).

또한,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항 전단).

만약,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 및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2. 주요경영사항 등 공시의무 및 불성실공시

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을 수시공시 또는 조회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 포함)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 참조].

1.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2.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3.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4. 위 1.부터 3.까지 이외에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공시

▪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요경영사항 공시, 공정공시 사항, 자율공시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하여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공시요구 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이에 따라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1항 본문 참조).

▹ "풍문 및 보도"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기업내용에 관하여 한국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 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말합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5조).

▪ 풍문 및 보도가 없더라도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한국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이에 따라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2항 본문 참조).

※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조회공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똑같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정공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정공시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공정공시대상정보”라 함)을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제1항).

-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함)를 제출하기 이전의 해당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 주요경영사항 신고·공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정공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장법인의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이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됩니다.

불성실공시의 유형(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주요경영사항, 조회공시대상정보, 공정공시대상정보 등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한 때,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한 때에는 공시불이행으로 봅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9조 참조).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에는 공시번복으로 봅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0조 참조).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공시내용 중 일부를 20% 이상 또는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에는 공시변경으로 봅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1조 참조).

※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에 해당된다고 결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됩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제1항 본문 참조).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현황에 대한 정보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인에 대해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점이 부과됩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제2항 참조).

> ※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매매거래가 지정일 당일 1일 동안(지정일이 매매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매거래일 1일) 정지될 수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6조제3항제3호).

> ※ **불성실공시법인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
> **Q.**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
> **A.** 공시의무 위반으로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아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
>
> 더불어, 공시의무 위반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① 불성실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 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②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제4호).

2. 주식의 거래

2.1. 주식거래 방법 이해하기

2.1.1. 계좌개설 및 주문 제출 등

주식 매매거래를 하려면 먼저 증권회사에서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해야 합니다.

매매거래의 자격

▪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로서 한국거래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만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8조 제1항 본문 참조 및 「회원관리규정」 제4조제1항).

- “회원”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누구의 계산으로 하든지 자기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회원관리규정」 제2조제1항제1호).

▪ 따라서 일반 투자자가 주식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고 한국거래소 회원으로 등록된 증권회사 등에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 해당 증권회사 등을 통해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간접 참여하게 됩니다.

매매거래계좌의 설정

▪ 회원(증권회사)은 위탁자(주식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투자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해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7조제1항 본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3조제1항 본문).

투자자는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 매매거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 위탁 방법

▪ 회원(증권회사)은 위탁자(주식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투자자)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9조제1항).

- 문서에 따른 방법
- 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 회원(증권회사)은 위탁자(주식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투자자)의 주문에 따라 해당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종목명, 체결일, 체결수량 및 가격,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등의 매매거래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제3항 본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9조제4항 본문).

매매거래 위탁의 거부

▪ 회원(증권회사)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해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4조제1항 전단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0조제1항 전단).

1.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2. 위 1. 외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회원(증권회사)은 공매도호가의 제한,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의 규정을 위반하는 공매도주문의 수탁을 거부해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4조제2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0조제3항).

위탁증거금의 징수

▪ 회원(증권회사)은 위탁자(주식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투자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매수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代用證券: 거래증거금을 현금에 갈음하여 예탁할 수 있는 증권)으로,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매도증권,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위탁증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2조제1항).

> ※ **"위탁증거금"**이란 회원(증권회사)이 투자자(위탁자)로부터 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자의 결제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하는 현금 또는 증권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한국거래소가 위탁증거금의 징수율과 그 징수방법을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1998년 4월 1일부터는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증권회사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약 40%의 징수율로 위탁증거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 <출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s://regulation.krx.co.kr/)-규정/제도-매매거래제도-유가증권시장-수탁제도 참조>

위탁수수료의 징수

▪ 회원(증권회사)은 위탁자(주식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투자자)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의 위탁을 받아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위탁자로부터 결제시 회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0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9조제1항).

매매거래계좌를 통해 주문을 제출하면 증권회사는 호가(呼價)를 입력합니다.

주문 제출 및 호가 입력

▪ 위탁자(주식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이하 "주문"이라 함)를 회원에게 제출하면,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따라 거래소시스템에 계좌별로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이하 "호가"라 함)를 입력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4항·제5항, 제9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6항, 제9조제1항).

주문 및 호가의 종류

▪ 주문 및 호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4항·제5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6항).

주문	호가
1. 지정가주문: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주문 2. 시장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으로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및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서 각각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3. 조건부지정가주문: 장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주문 4. 최유리지정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최유리지정가호가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5. 최우선지정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최우선지정가호가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6. 목표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등 특정의 가격수준을 목표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주문 7. 경쟁대량매매주문: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장중경쟁대량매매 또는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8. 중간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4항제7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9. 스톱지정가주문: 종목, 수량 및 가격은 지정하되, 스톱가격이 스톱지정가호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1. 지정가호가: 상장증권의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 2. 시장가호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호가로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및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서 각각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3. 조건부지정가호가: 장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가 4. 최유리지정가호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매도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5. 최우선지정가호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다른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다른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6. 경쟁대량매매호가: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장중경쟁대량매매 또는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7. 중간가호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8. 스톱지정가호가: 종목, 수량 및 가격은 지정하되, 스톱가격(지정가호가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가격을 말함)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하루 동안 주가가 변동할 수 있는 폭을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호가의 가격제한폭(상한가, 하한가)

▪ 주식의 호가가격은 기준가격(일반적으로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대비 30%를 더한 가격(상한가) 보다 높거나 기준가격 대비 30%를 뺀 가격(하한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제1항·제2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제1항제1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제2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제1항제1호).

2.1.2. 매매거래일·거래시간 및 거래 원칙 등

매매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매매거래일

▪ 증권시장은 다음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립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조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5조제1항).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 토요일
-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로 함)
- 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거나 한국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매매거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거래 방법

▪ 매매거래는 일반적으로 보통거래(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로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조제1항제3호·제4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2제1항제2호·제4항).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호가접수시간은 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입니다.

매매거래시간

▪ 매매거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조제3항 본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제3항).

구분		매매거래시간
정규시장	• 정규시장	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
	– 장중경쟁대량매매	오전 9시 ~ 오후 3시
시간외시장	•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	오전 8시 ~ 오전 9시
	– 시간외종가매매	오전 8시 30분 ~ 오전 8시 40분
	•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오후 3시 40분 ~ 오후 8시
	– 시간외종가매매	오후 3시 40분 ~ 오후 4시
	– 시간외접속매매	오후 4시 ~ 오후 8시 (최종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오후 8시 이후 해당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

호가접수시간

▪ 호가는 다음의 호가접수시간에 해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조제1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제1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제1항).

구분		호가접수시간
정규시장	• 정규시장	오전 8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장중경쟁대량매매	오전 9시 ~ 오후 3시
시간외시장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 시간외종가매매	오전 8시 30분 ~ 오전 8시 40분
	–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바스켓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	오전 8시 ~ 오전 9시
	•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시간외종가매매	오후 3시 30분 ~ 오후 4시
	– 시간외접속매매	오후 4시 ~ 오후 8시
	– 시간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	오후 3시 40분 ~ 오후 8시

호가단위는 주가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하며, 매매수량단위는 1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호가단위

▪ 호가수량단위는 1주로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1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제1항제1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5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제1항).

▪ 호가가격단위(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1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제2항 본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5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제2항).

구분	호가가격단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1주의 가격이 2,000원 미만인 종목	1원	1원
1주의 가격이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	5원	5원
1주의 가격이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인 종목	10원	10원
1주의 가격이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종목	50원	50원
1주의 가격이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인 종목	100원	100원
1주의 가격이 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인 종목	500원	500원
1주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종목	1,000원	1,000원

매매수량단위

▪ 매매수량단위는 1주로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1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5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제1항).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쟁매매의 원칙

▪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따르며, 개별경쟁매매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구분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1항).

호가의 우선순위

▪ 개별경쟁매매에 있어서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에 따릅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제2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2항).

구분	내용
가격우선의 원칙	•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함 •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함 (다만,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에 가격적으로 우선하되, 매도시장가호가와 하한가의 매도지정가호가, 매수시장가호가와 상한가의 매수지정가호가는 각각 동일한 가격의 호가로 봄)
시간우선의 원칙	동일한 가격호가간의 우선순위와 시장가호가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함

▪ 다만, 시가 등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동시호가(호가시간의 선후를 구분하지 않는 호가)로 하며,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제3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제1항·제2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3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제1항).

구분	내용
수량우선배분의 원칙	수량이 많은 호가가 수량이 적은 호가보다 우선함
위탁자우선의 원칙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은 위탁매매의 호가가 자기매매의 호가에 우선함 • 이 경우 위탁매매의 호가간, 자기매매의 호가간에는 수량이 많은 호가가 수량이 적은 호가보다 우선함

2.2. 주주의 권리 확인하기

2.2.1. 투하자본 수익·회수 및 경영참여·감독에 대한 권리

투하자본의 수익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익배당

▪ 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배당을 결정하게 되면, 배당가능이익 한도에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제1항 참조).

▪ 주주는 금전 대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상법」 제462조의2제1항 및 제4항 참조).

▪ 또한,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받거나 3월, 6월, 9월을 기준으로 하는 분기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의3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제1항 참조).

> **※ 배당을 받을 권리**
>
> **Q.** 올해 1년 동안 언제든지 A주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A주식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A.** 아니오. 배당을 받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해당 회사의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한정됩니다. 즉, 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배당을 받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합니다.
>
> 따라서 주주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배당락일) 전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354조제1항 참조).

신주인수권

▪ 주주는 회사가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18조제1항 참조).

> **※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
>
> **Q.** B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요. 언제까지 B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나요?

A.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에 해당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가 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미리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나 신주배정기준일을 공고해야 하며,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권리락일) 전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354조제1항 및 제418조제3항 참조).

투자자본의 회수를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회사가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주주는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38조 본문 참조).

주식매수청구권

▪ 회사의 영업양도, 합병, 분할합병 등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소유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의6, 제374조의2제1항, 제522조의3 및 제530조의11제2항 참조).

경영 참여를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제1항).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제1항).

주주제안권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의2제1항).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제2항 및 「상법 시행령」 제32조).

의결권

▪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합니다(「상법」 제368조 및 제369조제1항 참조).

▹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8조의3제1항 및 제368조의4제1항 참조).

집중투표제도

▪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2조의2제1항).

▹ 이 경우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2조의2제3항).

경영 감독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등 열람권

▪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48조제2항).

회계장부열람권

▪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6조제1항).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1%(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제4항 및 「상법 시행령」 제32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

▪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7조제1항).

유지청구권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해 이사에게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2조).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5%(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제5항).

▪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4조).

대표소송

▪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제1항).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제6항).

이사해임결의권

▪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제1항 전단 및 제434조).

이사해임청구권

▪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제2항).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5%(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이사해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제3항 및 「상법 시행령」 제32조).

2.3.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2.3.1.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및 배당소득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제1항·제2항).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2) 위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다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은 제외)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에 따라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주식의 양도일 현재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은 제외)

※ **"주권상장법인대주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1.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함) 현재 소유한 주식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함)이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다만,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호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함)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함)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다만,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양도소득세 계산

▪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2조제2항, 제97조 및 제103조제1항제2호).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필요경비-기본공제(연 250만원)

2.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구분	세율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30%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x 25%)
•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1) 중소기업의 주식	10%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20%

※ **"대주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4% 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포함)

2)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함)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①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②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③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2호 및 제106조제1항).

▪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기본공제를 한 경우(「소득세법」 제103조제2항)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1항·제4항 단서, 제11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제5항제3호).

※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Q.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을 제외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해외주식 매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포함)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다음의 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제104조제1항제1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① 중소기업의 주식 등: 10%

② 그 밖의 주식 등: 20%

그리고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합니다(「증권거래세법」 제2조 본문).

증권거래세 계산

▪ 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가액에 다음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구분	세율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함)에서 양도되는 주권	0.05%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함)에서 양도되는 주권	0.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① 코스닥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697호)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함]에서 양도되는 주권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0.2%

증권거래세의 징수

▪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주식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해야 합니다(「증권거래세법」 제9조제1항).

※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증권거래세법」 제3조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1)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2) 증권시장 밖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여 양도되는 주권
2. 위 1. 외에 금융투자업자가 주권의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위 1. 및 2. 외의 방법으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자(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주권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함)

배당금을 받을 때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의 범위

▪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세 계산

▪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금액에 14%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

▪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제128조제1항 및 제130조).

> ※ 그 밖에 주식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nts.go.kr/) 또는 상담전화 ☎126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시장 감시제도

3.1. 매매거래중단·정지 및 시장경보제도 이해하기

3.1.1.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 및 시장경보제도

지수가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하는 경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어 2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CB, 매매거래중단 제도)

▪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의 수치 및 코스닥지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기준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함)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제2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6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제2항).

구분	매매거래중단 발동기준	매매거래중단 및 재개 등
1단계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8% 이상 하락(1분간 지속)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2단계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동시충족 필요, 1분간 지속)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3단계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20% 이상 하락 2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동시충족 필요, 1분간 지속)	당일 장종료 조치

※ **프로그램매매 호가효력 일시정지제도(Sidecar)**

Q. 몇 년 전에 사이드카(Sidecar)가 발동됐다는 경제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서킷브레이커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A.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중단 제도)**는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식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면, **사이드카(Sidecar)제도**는 프로그램매매를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매매의 호가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regulation.krx.co.kr/)-규정/제도-매매거래제도-유가증권시장-시장운영 및 관리-프로그램매매 참조].

사이드카(Sidecar)제도에 따르면 국내지수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매매거래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그 종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최종거래일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종목을 말함)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프로그램매매의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6조제1항). 프로그램매매 호가의 효력정지가 5분이 지나거나 장종료 40분전 이후 등에는 효력정지가 해제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6조제3항 참조).

※ 코스닥시장의 프로그램매매 호가효력 일시정지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가 폭주하거나 투자유의(留意)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 한국거래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고,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6조제1항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제2항).

매매거래정지 사유	매매거래 재개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호가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함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그 다음 매매거래일 (다만,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시장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함

코스닥 시장의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 한국거래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제1항).

매매거래정지 사유	매매거래정지기간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1일간 (다만,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주식병합, 주식분할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으로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 주식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결제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인 경우	요청받은 기간 (다만, 한국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 매매거래정지종목 현황에 대한 정보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 등에 대해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

▪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투자주의종목

▪ 시장감시위원회는 소수지점거래집중종목,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 종가급변종목,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등에 해당하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제1항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4항 참조).

투자경고종목 및 매매거래정지

▪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1항).

▪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며, 특정일의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의 경우 20% 이상)인 종목에 대해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해당 시장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5제1항).

투자위험종목 및 매매거래정지

▪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일정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2항).

▪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해당 종목에 대해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6제1항).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신용거래 금지

▪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신용거래가 금지됩니다(「금융투자업규정」 제4-30조제2항제1호).

대용증권 사용 금지

▪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대용증권(代用證券: 거래증거금을 현금에 갈음하여 예탁할 수 있는 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8조제2항제1호라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3조제2항제1호단서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제5호).

위탁증거금 100% 납부

▪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에 대해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위탁금액 전부(현금에 한함)를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제5항 본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2조제9항).

> ※ 그 밖에 시장경보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지정 현황에 대한 정보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http://moc.krx.co.kr/)-시장감시-시장경보/투자유의안내>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불공정거래행위 이해하기

3.2.1. 내부자거래 금지

내부자거래로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 포함), 직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 등”이라 함)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함)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1항 참조).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조의 증권 제외)

2. 위 1.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위 1. 또는 2.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위 1.부터 3.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 해당 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위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2항 참조).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위의 반환청구권은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5항).

> ※ 단기매매차익 거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제1항 참조).

> ※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등에 대한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상장법인의 업무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아래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포함)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상장예정법인 등”이라 함) 포함]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상장예정법인 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 등 포함)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

1. 그 법인(그 계열회사 포함)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그 계열회사 포함)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해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위 2.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 포함)·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위 2.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위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위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포함)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 그 밖에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 미공개중요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조제2항).

중요정보	정보의 공개 기준 (다음의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
1.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
2.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공개된 때부터 3시간
3.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함)
4.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해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6시간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해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1호).

▹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 단서).

▪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2항).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해당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제1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제2항).

3.2.2. 시세조종행위 금지

특정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시세조종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시세조종행위

▪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에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위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조).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할 때에 형성된 시세, 상장되는 증권에 대해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따라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에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3항 본문).

▪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래소가 그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품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매매 등"이라 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조의2).

1.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조의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위의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

▹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 단서).

▪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2항).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시세조종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행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내용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제1항).

1. 그 위반행위로 인해 형성된 가격에 따라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등 또는 위탁으로 인해 입은 손해
2. 위 1.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함)로 인해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 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등 또는 위탁으로 인해 입은 손해
3. 위 1. 및 2.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함)로 인해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제2항).

3.2.3.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공매도 제한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거래행위

▪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1항).

-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부정거래행위를 한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 단서).

▪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2항).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부정거래행위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정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항).

▪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부정거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2항).

> ※ 부정거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정보 등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조심해야 합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 아래 1.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 2.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매매 등”이라 함)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제1항 본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②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 2.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정보”라 함)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③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④ 위 ② 또는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①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여부 또는 매매 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②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제2항 본문).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위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제4항 본문).

▹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제4항 단서).

> ※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매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의미

▪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려는 매도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1항 참조).

▪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여 결제일에 결제불이행 발생의 우려가 있고, 시장불안 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하락 가속화 및 변동성 확대 등 안정적인 시장의 운영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KRX정보데이터시스템-통계-공매도 통계-공매도 제도-공매도 의의).

▪ 하지만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며,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가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 세계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KRX정보데이터시스템-통계-공매도 통계-공매도 제도-공매도 의의).

공매도 금지

▪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 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포함)에서 상장증권[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앞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함)]에 대해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1항 본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위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10호).

▹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 단서).

▪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2항).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매도 금지의 예외

▪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8조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3에 따른 가격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제2항).

1. 투자자(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가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포함)가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①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임을 함께 알릴 것

   ②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③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포함)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않을 것

   ④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한국거래소에 알릴 것

   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알리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해당 공매도의 내역을 거래소에 알릴 것

2.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알리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해당 공매도의 내역을 거래소에 알릴 것

※ 공매도 관리제도

Q.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던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A.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1항 단서 참조).

한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현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제일까지 소유하게 될 예정으로 결제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없는 주식의 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로 보지 않음으로써 공매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2항).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KRX정보데이터시스템-통계-공매도 통계-공매도 제도-공매도 의의>